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2
------	------

2017. 4. 19.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4. 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기구 수 확대, 직속기관·사업소 신규 개관에 따른 기구 개편 및 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개정안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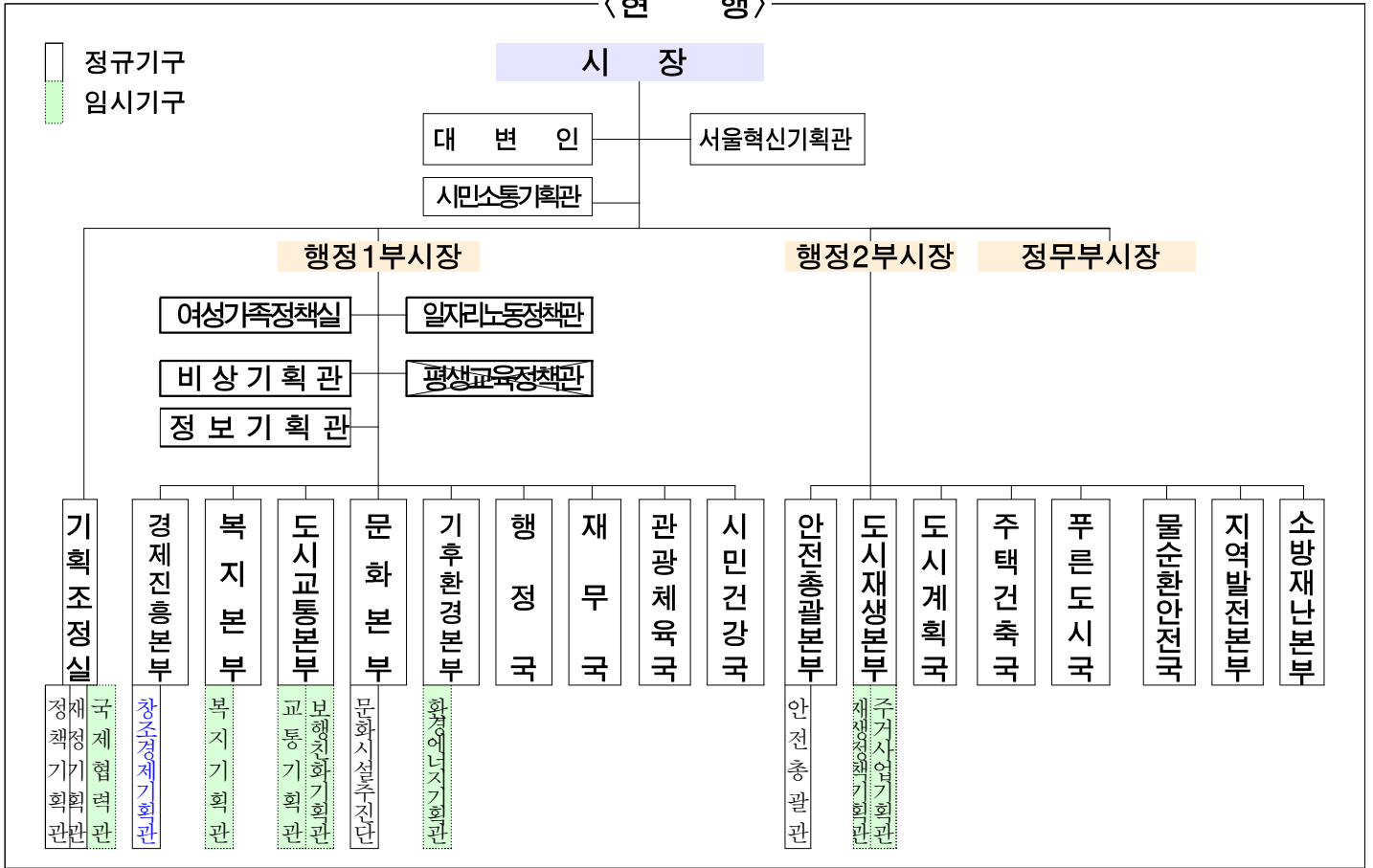
- 서울시장 제출안(이하 “2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실·국·본부 확대 및 임시기구 정비,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의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시정 핵심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기구 수가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으로 전환하고, 교통기획관을 정규화 하며, 기한이 도래하는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 또한, ‘서울로 7017’ 개장에 따른 운영조직 정비를 위해 기존 안전총괄본부내 ‘서울역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푸른도시국에 ‘서울로운영단’을 신설하고, ‘서울식물원’과 ‘성동소방서’를 신설하는 등 서울시(이하 “시”) 본청기구를 현행 ‘1실 9본부 8국 13관·단’에서 ‘1실 9본부 9국 13관·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 구체적인 조직체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조직체계 구성 : 1실 9본부 9국 13관·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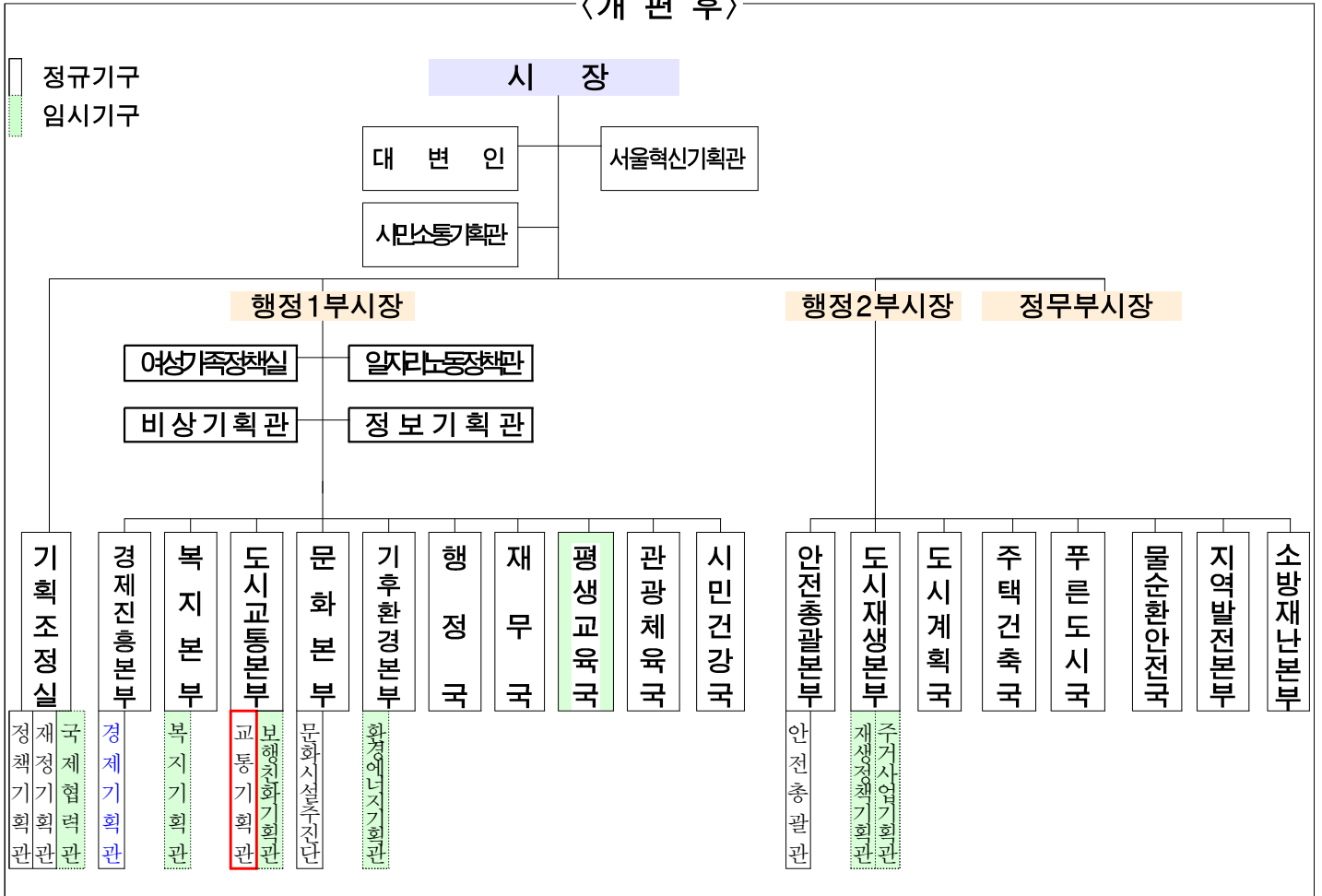
구분	기존	기능구분	개편 전후 비교	
			현행	개편안
실	1급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 총괄조정	<b>[1실]</b> 기획조정실	<b>[1실]</b> 기획조정실
본부	1·2급	다수의 사업 또는	<b>[9본부]</b>	<b>[9본부]</b>

		프로젝트 단위로 구분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경제진흥본부(1급) 복지본부(1급) 도시교통본부(1급) 문화본부(2급) 기후환경본부(2급) 안전총괄본부(1급) 도시재생본부(1급) 소방재난본부(소방정감) 지역발전본부(3급, 한시)	경제진흥본부(1급) 복지본부(1급) 도시교통본부(1급) 문화본부(2급) 기후환경본부(2급) 안전총괄본부(1급) 도시재생본부(1급) 소방재난본부(소방정감) 지역발전본부(3급, 한시)
국	2·3급	기능별 책임전담 및 고유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b>【8국】</b> 행정국(2급) 재무국(2급)  관광체육국(2급) 시민건강국(2급) 도시계획국(2급) 주택건축국(2급) 푸른도시국(2급) 물순환안전국(2·3급)	<b>【9국】</b> 행정국(2급) 재무국(2급) <u>평생교육국(2·3급)</u> 관광체육국(2급) 시민건강국(2급) 도시계획국(2급) 주택건축국(2급) 푸른도시국(2급) 물순환안전국(2·3급)
관·단	2·3급	보좌기구	<b>【13관·단】</b> 여성가족정책실장(1급) 대변인(2급) 비상기획관(2급) 정책기획관(3급) <u>평생교육정책관(3급)</u> 시민소통기획관(3급) 창조경제기획관(2급) 정보기획관(3급) 재정기획관(3급) 일자리노동정책관(3급) 서울혁신기획관(3급) 안전총괄관(3급) 문화시설추진단(3급)	<b>【13관·단】</b> 여성가족정책실장(1급) 대변인(2급) 비상기획관(2급) 정책기획관(3급) <u>교통기획관(3급)</u> 시민소통기획관(3급) 경제기획관(2급) 정보기획관(3급) 재정기획관(3급) 일자리노동정책관(3급) 서울혁신기획관(3급) 안전총괄관(3급) 문화시설추진단(3급)

〈 현 행 〉



〈 개 편 후 〉



## 나. 주요개편 내용에 대한 검토

### 2) 평생교육국 신설(2안 제12조의3 신설)

- 우선 안 제12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시의 실·국·본부가 기존의 17개에서 16~18개로 확대됨에 따라 보좌기구로 운영되던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이미 안전과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민선6기 핵심과제 추진에 필요한 기구 정비가 5회에 걸쳐 완료되었다고 판단해 국 신설 대신에 기존 보좌기구 가운데 업무중요도와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새롭게 국으로 전환되는 ‘평생교육국’은 기존과 같이 4개과로 운영되면서 교육격차 해소외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및 평생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임.
- 관련 법령 정비에 따라 실·국·본부의 확대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추가적인 기구 설치 대신 보좌기구를 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운영 추진에 필요한 기구 확대가 이미 완료되었고, 불법적으로 운영중인 임시기구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 3)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2안 부칙 제2조)

- 시는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 등 2개의 한시기구를 1년의 시한으로 신설해 운영해 왔음<sup>1)</sup>.
- 그 동안 ‘지역발전본부’는 4대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과 전략산업과 공간계획을 연계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총괄 조정 역할을, ‘문화시설추진단’은 각종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건립 등을 전담해왔음.
- 당초 협의에 따라 올 6월과 8월에 각각 존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등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 및 사업 실행(지역발전본부)과 공예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을 이유로 2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sup>2)</sup>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1) 존속기한 : 지역발전본부('16. 7. 1 ~ '17. 6. 30), 문화시설추진단('16. 8. 19 ~ '17. 8. 18)

2)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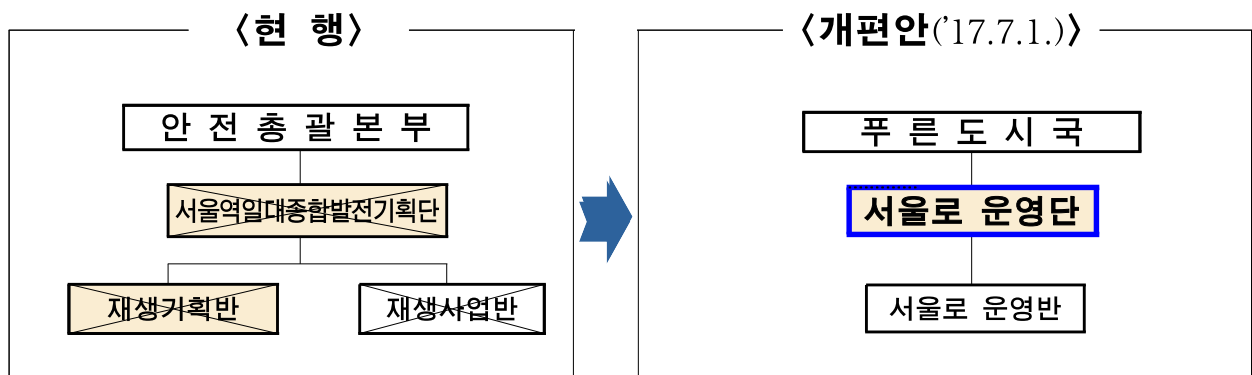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끝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가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2개 한시기구의 경우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행 조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우선될 수 있음.
- 행정자치부가 시의 조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개의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을 허용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된다는 사정을 고려해 향후 기구 축소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임.

#### 4) 서울로 7017 개장 운영조직 정비(2안 제15조 및 제19조 등)

- 안 제15조와 제16조는 현재 안전총괄본부 소관사무인 서울역고가 보행길 조성 등 서울역 7017프로젝트에 사무를 푸른도시국으로 이관해 서울로 7017 개장 후 기획과 운영 및 사업홍보,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현재 안전총괄본부내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푸른도시국내에 '서울로 운영단'을 신설할 계획임.



- 이는 그 동안 안전총괄본부가 교량 안전 보장을 비롯한 서울로 7017로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나 각종 공사가 마무리되고 올해 5월 20일 개장을 앞두고 관련기관간 협업체계 구축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설관리 등 향후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시의 공원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5) 사업소 신설 등(2안 제116조부터 제118조 신설, 안 별표1)

- 시는 강서구 마곡동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 ‘서울식물원’을 조성해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사무를 수행할 사업소 조직을 신설하고자 함.
- 현재 시는 강서구 마곡동에 2015년부터 약 2,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8,000㎡ 규모로 식물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1차 개장을 앞두고 있음.

#### 【 서울식물원 개요 】

- 위치 :	강서구 마곡동(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 면적 :	658,000㎡(유수지 제외시 503,000㎡)
- 공사기간 :	2015년 11월 ~ 2018년 6월
- 1차 개장 :	2017년 10월 예정(공원부와 식물원 일부 개장)
- 전면개장 :	2018년 6월 예정
- 공사비 :	2,156억원
- 수목식재 :	교목 13,163주, 관목 383,675주, 초본 1,067,335본 등
- 건축물 :	식물문화센터, 재배온실, 정원문화학교 등 12개동

- 식물원과 공원이 조화된 세계적인 식물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식물원의 부분 개장이 10월로 다가옴에 따라 식물연구·관리와 전시·교육 전문인력의 시급한 배치 등이 요구되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으며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사업소의 설치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2과 15명 규모의 4급 사업소로 우선 신설되는 ‘서울 식물원’에 대해 시는 본격 개장을 앞둔 2018년 1월경부터 3과 37명 규모로 확대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부분 개장 이후 운영과정에서 조직이나 인력운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조직 확대의 적정성을 새롭게 평가해야 할 것임.
- 또한, 안 별표1은 2017년 7월 성동소방서 신설계획에 따라 기존의 광진소방서가 함께 관할하던 성동구 지역의 소방사무를 신설되는 성동소방서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성동소방서가 신설되는 경우 현재 광진소방서가 맡고 있는 성동구 관내 소방업무관련 조직이 이관되면서 인력과 장비가 분할될 예정임.

#### 다. 종합 의견

- 금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실·국·본부 수가 17개에서 18개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의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으로 전환하고, 2016년 신설되어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 등 2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실·국·본부의 확대가 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보좌기구를 정비해 필요 이상의 조직확대에 나서지 않은 시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6개의 불법기구를 임시기구라는 왜곡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시의 3급 이상 조직규모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해소 하기도 곤란한 상황임.

**【 초과기구 현황(6개)】**

구분	임시기구 명칭	소 속	비 고
기획관(임시) (6개)	국 제 협 력 관	기획조정실 산하	
	복 지 기 획 관	복지건강본부 산하	
	보 행 친 화 기 획 관	도시교통본부 산하	
	환 경 에 너 지 기 획 관	기후환경본부 산하	
	재 생 정 책 기 획 관	도시재생본부 산하	
	주 거 사 업 기 획 관	도시재생본부 산하	

- 2개 한시기구와 6개 불법적인 임시기구를 포함해 현재의 비정상적인 조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건의 등을 포함한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sup>3)</sup>.

3) 2015년 11월 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2개(현행 17개)의 실·국·본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음.

- 또한, 집중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한시기구의 신설 필요성과 시정성과 창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정한 바와 같이 한시기구의 경우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폐지되는 것이 원칙인 사정을 고려해 조직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무국, 관광체육국”을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으로 한다.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제4호로 한다.

4. 경제민주화, 민생침해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정책 수립·시행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친환경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로7017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검진·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및 「가축 및 축산물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등 검사에 관한 사항

제107조제2항 중 “중구 퇴계로26길 36(예장동)”을 “마포구 매봉산로 31(상암동)”으로 한다.

제116조부터 제121조까지를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로 하고, 제22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절 서울식물원

제1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식물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식물원(이하 이 절에서 “식물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812에 둔다.

제117조(원장) 식물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8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식물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식물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식물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별표1 광진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진소방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광진구 일원
-------	-------------------------	--------

같은 표 광진소방서란 다음에 성동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	성동구 일원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 중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중 “민생경제과장”을 “공정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산업경제정책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생략)</p> <p>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u>재무국, 관광체육국</u>,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를 둔다.</p>	<p>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u>, ----- ----- ----- -----.</p>
<p>제6조(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3. (생략)</p> <p><u>4.~6. (생략)</u></p> <p><u>7.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u></p> <p>8.~12. (생략)</p> <p><u>&lt;신 설&gt;</u></p>	<p>제6조(경제진흥본부) ----- -----.</p> <p>1.~3. (현행과 같음)</p> <p><u>5.~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u></p> <p><u>4. 경제민주화, 민생침해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u></p> <p>8.~12. (현행과 같음)</p>
<p><u>&lt;신 설&gt;</u></p>	<p><u>제12조의3(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u>1. 교육지원정책 수립·시행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u></p> <p><u>2.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u>3.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정</u></p>





현 행	개 정 안
<p><u>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검진·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3. (생 략)</p> <p>제107조(설치) ① (생 략)</p> <p>② 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u>중구 퇴계로26길 36(예장동)</u>에 둔다.</p> <p>③ (생 략)</p> <p><u>〈신 설〉</u></p>	<p><u>에 관한 사항</u></p> <p>3. 「<u>동물위생시험소법</u>」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및 「<u>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가축 등 검사에 관한 사항</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10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마포구 매봉산로 31(상암동)</u> -----.</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2절 서울식물원</b></p> <p><u>제1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식물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식물원(이하 이 절에서 “식물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 식물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812에 둔다.</u></p> <p><u>제117조(원장) 식물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u>제118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u></p>

현 행	개 정 안															
<p>제116조~제121조 (생략)</p> <p>【별표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p> <table border="1" data-bbox="162 909 780 1032"> <thead> <tr> <th>명칭</th> <th>위치</th> <th>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광진소방서</td> <td>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td> <td>성동구 및 광진구 일원</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광진소방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성동구 및 광진구 일원	<p>항을 관장한다.</p> <p>1. 식물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2. 식물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p> <p>3. 식물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p> <p>제119조~제124조 (현행 제116조부터 제121조까지와 같음)</p> <p>【별표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p> <table border="1" data-bbox="793 909 1418 1093"> <thead> <tr> <th>명칭</th> <th>위치</th> <th>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광진소방서</td> <td>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td> <td>광진구 일원</td> </tr> <tr> <td>성동소방서</td> <td>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td> <td>성동구 일원</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광진소방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광진구 일원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	성동구 일원
명칭	위치	관할구역														
광진소방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성동구 및 광진구 일원														
명칭	위치	관할구역														
광진소방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광진구 일원														
성동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	성동구 일원														